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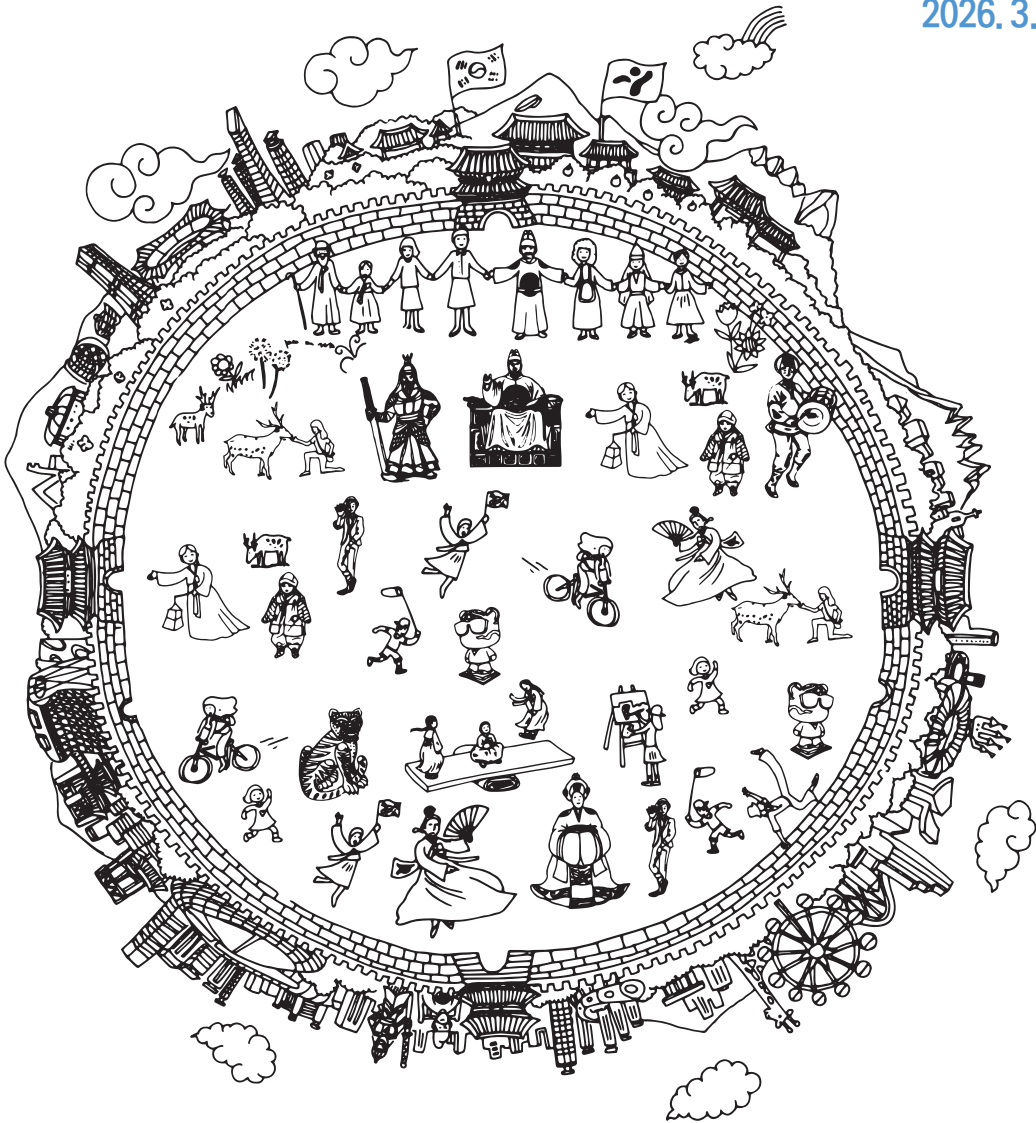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34호
2026. 3. 18.(수)



목 차

◆ 고 시

제2026-15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2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41호(2026. 3. 1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고시된, 「감사의 정원 상징조형물 조성(미디어 전시공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광장)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가 완료(2026. 3. 18.)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사업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2133-7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로·광장)사업
- 2) 명 칭 : 감사의 정원 상징조형물 조성(미디어 전시공간)

다. 사업 규모 및 내용

- 1) 면적 : 495.46㎡ (문화시설, 도로, 광장 중복결정 면적 : 860.50㎡)
- 2) 규모 : 지하1층, 연면적 495.46㎡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3) 내용 :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조성하고,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전시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문화정보 교류공간이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휴식 및 참전국과 연대 등 사교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1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도 첨부]
-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사용·활·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종면적 (㎡)	사용면적 (㎡)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종로구 세종로 1-68	도로	42,027.8	495.46	국토 교통부	100	세종특별자치시 도동로 11	종로 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50 케이트타워B동	재산 관리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